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외교 다변화 기조에 따른 정상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전장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배치·평가·징계 및 그 밖의 인사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2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재외공관장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며, 재외공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4명(7등급1, 5·6등급2, 3·4등급1)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외교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 6.24. ~ 6.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1호 중 “임용·배치·징계”를 “임용·배치·평가·징계”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68명”을 “69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62”를 “973”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22”를 “733”으로 하며, 8등급 이하 “664”를 “675”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전장 1개 담당관	4명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생략)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③ ----- -----.
1. ~ 20의2. (생략)	1. ~ 20의2. (현행과 같음)
21. 소속 공무원의 <u>임용 · 배치</u> <u>· 징계</u> 그 밖의 인사사무	21. ----- <u>임용 · 배치</u> <u>· 평가 · 징계</u> -----
22. ~ 30. (생략)	22. ~ 30. (현행과 같음)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u>68명</u> 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 <u>69명</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외교부 본부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62</u>	<u>973</u>	+1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22</u>	<u>733</u>	+11
•	•	•	
•	•	•	
8등급 이하	<u>664</u>	<u>675</u>	+1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3